

# 生産性 범위 에서 賃金 調整



崔

炳

煥

(評論家)

低賃金 시정을 위한 社會的 요구가 높아가는 가운데 대부분의 企業은 76년도의 賃金調整期를 맞아 이미 조정했거나 조정할 단계에 있다.

生活의 개선 향상을 열망하는 勤勞者들은 48.85%라는 높은 引上요구를 내걸고 신년도 賃金引上鬪爭을 벌이고 있으나 企業측으로서 는 계속된 不景氣와 輸出立國을 위한 國際競爭力強化란 觀點에서 勤勞者들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3차에 걸친 經濟開發計劃期間에 우리나라 企業의 賃金引上은 賃金勤勞者의 實質所得 향상에도 많은 改善을 보아 年平均 24%에 달하는 高율의 賃金引上을 보았고 이는 그간의 物價上昇率을 감안하고도 年 6.8%의 實質賃金의 향상을 이룬 것이다.

그 結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자유중국제국보다 賃金水準이 앞서게 되었으며 홍콩과도 賃金격차가 크게 좁혀져 62년의 1대 4에서 1대 1.3정도로 좁혀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賃金水準의 향상은 우리의 賃金이 無條件低位에 있다는 일반적 觀念을 시정해야 할 契機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賃金調整에 있어서는 生活源泉으로서의 賃金問題와 같은 比重을 갖고 對外競爭力提高와 雇傭의 維持확대등의 觀點에서 企業의 費用負擔요인으로서의 賃金問題를 다루어야 할 새로운 認識의 轉換이 必要한 단계에 온것으로 생각된다.

## 安定化에 맞춰

이러한 가운데 금년도는 전년도와는 다른 賃金調整의 여건하에 놓여 있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經濟施策의 基本方向이 物價의 安定으로 인플레이션을 經濟成長을 위해 總需要抑制을 비롯하여 모든 經濟施策이 安定化方向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는 세계적인 不景氣下에서도 7.4%의 經濟成長을 이룩한 것을 큰 成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經濟는 이를 위해 계속된 인플레이션의 양진이라는 높은 代價를 치러야만 했다.

따라서 금년은 비록 低成長의 代價를 치르더라도 物價 10%(消費者物價 12%)線的 安定이 政策的인 至上課題라 할진대 賃金調整도 다른 經濟政策手段과 같이 經濟의 安定化施策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經營合理化 원칙에 비추어 보면 지금 個別企業은 대부분 過剩雇傭상태에 있는 형편이다.

賃金水準의 上昇과 이에 걸친 不景氣는 당연히 人力의 정비등 省力化를 통한 經營合理化가 뒤따라야 했지만 失業保險制度를 갖지 못한 韓國의 企業은 社會的 要求에 따라 不景氣下의 과잉인력을 그대로 포용하고 있어야만 했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76년도 賃金調整에 있어 전례없던 새로운 特殊與件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은 與件의 변화를 감안할 때 76년도의 賃金調整은 종래와는 달리 賃金調整 계산의 기준을 前年度物價 및 前年度 GNP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변경하는 經濟與件에 대응할 수 있도록 豫想物價~上昇率과 目標達成率 그리고 주요競爭國의 賃金調整動向을 同時에 감안한 未來指向的인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지난번 勞總은 전년도 消費者物價上昇率

25.4%와 이에 더하여 物價上昇에 따른 이른바 賃金損失率 13%, 또 勞動生産性向上분 13%와 GNP成長率 7.4%의 算術平均值까지 합산한 48.85%의 賃金引上要求率을 발표하고 있다. 하나 이는 企業의 지불능력과 對外競爭力에 전주어 볼때 적지 않은 問題를 제기하고 있다 하겠고 만약에 이 引上要求率을 無理없이 충족시켜 주자면 勞動生産性이 적어도 종래의 3배는 향상되어야 한다는 數學的 계산이다.

### 稅負擔 줄여야

賃金の 調整이 계속하여 雇傭의 擴大均衡을 유지하는 시책과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또 輸出立國을 지향하고 있는 開放經濟하에 있는 현실을 지시할때 국제적인 勞賃코스트의 比較優位를 견지하도록 그 調整線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賃金の 調整引上은 원칙적으로 勞動生産性 向上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今年度의 賃金引上調整의 표준적인 준거율은 대체로 ① 豫想消費物價水準과 ② 目標 GNP成長의 一定率 그리고 ③ 個別企業의 支拂能力을 加減하는 선인 17%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水準에서 마련되어야 할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勤勞者의 可處分所得을 높이는 政府·勞使의 協力이 제고되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즉 個別企業의 賃金引上 노력에도 못지않게 강조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政府가 消費者物價를 계획한대로 12%선에서 안정토록 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政府는 賃金の 實質可處分所得의 향상을 위해 현행 甲勤稅率의 대폭인하를 비롯하여 控除率의 확대등으로 賃金調整의 효과를 동시에 뒷받침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